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9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21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평균 160건으로 다른 전문직(변호사 평균 17건, 교수 평균 33건)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의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국

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8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결격사유 등)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u>
	<u>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스토킹범죄</u>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동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73. 2월 전부개정된 「의료법」 [법률 제2533호]²⁾에서 ‘법령 위반’을 결격사유로 처음 규정하면서 위반 법령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2000년 1월 일부개정³⁾을 통해 대상 법령을 제한하였음.

- 2000년 개정에서는 의료법과 형법상 직무관련 규정(허위진단서

1)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가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만, 면허취소 요건으로서는 국민의료법(1951년 제정, 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됨) 제정 당시부터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가 규정되었음.

3) [법률 제6157호, 2000.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함 (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

작성·업무상비밀누설 등) 및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5월, 현행과 같이 대상 법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격사유가 다시 확대되었음.

<의료인의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주요개정 연혁>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제6157호, 2000.1.12., 일부개정]	5. <u>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u>
[법률 제6686호, 2002. 3. 30., 일부개정]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현행법이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를 규정하면서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입법태도로
서, 의료인에 대한 고도의 도덕성·직업윤리의 요구와 전문직종
간 형평성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4)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 치료감호 및 징계까지 포함하여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안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
-------------------------------------	--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및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중 제6호의3과 제6호의4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⁵⁾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

<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비교 >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개정안이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려는 범죄행위(안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범죄행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이거나,⁶⁾ 정신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침해하는 반윤리적 행위⁷⁾ 등으로서, 환자의 신뢰 하에 생명·

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7) 헌재 2019. 5. 30. 2017헌바46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성숙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인의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2024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6개 전문직⁸⁾ 중 입건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업군의 비중이 문화·예술·체육인에 이어 2번째로 높고, 종사자 천명당 입건 수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중략)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 8) 경찰범죄통계에서는 피의자 직업을 전문직·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으로 분류하고, 전문직·관리직을 다시 교사(사립), 금융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기업대표·임원, 기타전문직을 포함한 11개 직업군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6개 전문직으로 한정하여 살펴봄.

- 2013.10.4. 뉴스1, “5년간 의사 등 전문직 성범죄자 1천명 검거”(강기윤의원실 자료 인용)
- 2014.9.25. 서울경제, “6대 전문직 성범죄 연간 400건 넘어...의사 1위”(강기윤의원실 자료 인용)
- 2015.8.30. MBN, “전문직 성범죄 연평균 610건...1위는 성직자”(박남춘의원실 자료 인용)
- 2016.9.19. 서울경제, “전문직 성폭력 5년간 1258명...종교인 450명 1위”(박남춘의원실 자료 인용)
- 2019.9.2. 메디컬투데이, “5년간 전문직 성범죄 피의자 4760명...종교인·의사 등 전문직 비율↑”(정인화의의원실 자료 인용)
- 2021.9.28. YTN,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 ‘의사’...4년간 602명”(한병도의의원실 자료 인용)
- 2024.10.2. 뉴시스, “성범죄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면허 취소는 0건”(김남희의원실 자료 인용)

< 2024년 주요 전문직 성범죄 입건 현황 >

구분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변호사	교수 (사립)	종교가	언론인	문화·예술 ·체육인
강간	15	5	4	15	2	37
유사강간	6	0	3	3	0	11
강제추행	126	9	36	36	16	126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3	0	0	1	0	1
계(A)	150	14	43	55	18	175
직업별 종사자 수(B)	161,752	40,943	181,127	152,000	66,966	1,436,000
종사자 1,000명당 성범죄 입건 수 (A/B*1,000)	0.927	0.342	0.237	0.362	0.268	0.122

주1) 입건수 기준이므로, 유죄 확정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직업별 종사자수의 경우 건강보험통계연보,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교육통계서비스 (KESS), 한국의 종교현황, 한국언론연감, 문화체육관광 일자리현황조사 등의 각기 다른 자료를 사용하고 2024년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접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2024년 경찰청범죄통계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운전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⁹⁾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써 일정기간(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되었음.¹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4. (생략)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

□ 다만, 결격사유 조항은 전문자격의 건전성 유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자격제한의 필요성과 제한되는 기본권과의 형량, 유사제도와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¹¹⁾

-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은 그 범위가

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삭제 <2025. 4. 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11)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p.194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준범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이들로 하여금 갇생을 포기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이나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먼저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

넓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결격사유로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격사유로 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음.

- 개정안 제8조제8호 다목의 경우 ‘벌금 이하의 형’을 포괄하여 규정하여 벌금형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30일 미만의 짧은 기간 수감되는 구류나 비교적 소액의 금전형인 과료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3년 5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개정 당시 일부 원안의 입법취지가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였는데,¹²⁾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현행 조항이 시행된 지 2년 정도에 불과하여 개정법률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

12) <박주민의원안(2101824)>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 강도강간죄(미수범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위반행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결격사유(법령위반 행위)의 범위를 현행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4호).

<강선우의원안(2103138)>은 성폭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조제5호 신설).

13) 동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찬반 양론이 각각 제기된바 있음.

- 해당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일반적인 전문직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은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수준이 요구된다는 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타 전문직역의 경우 형사범죄의 종류에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에 대하여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의료인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특성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른 직역보다 크다는 점에서 여타 전문직역과 동일하게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최근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

- 특히,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경우 의료인으로서 는 소극적·방어적 진료로 대응할 유인이 높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참고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 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203280)이 우 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한편, 현행법 제8조는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간호법」 제7조에서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는 2024년 9월 「간호법」이 「의료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되 면서 개정된 것으로, 「간호법」 제정의 입법취지가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의료법」과 달리 정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만 개정될 경우, 간호사를 제외한 의 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

여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용되지만 간호사는 현행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¹⁴⁾ 따라서 간호사에 대하여 다른 의료인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니라면, 「간호법」 제7조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안마사는 「의료법」의 결격사유 규정이 준용되며,¹⁵⁾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음.¹⁶⁾

14)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15)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16) 「간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성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규정('23.11.20. 시행)을 통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다른 전문직역의 경우 벌금형은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형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인 자격을 20년 동안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며 최대 10년인 점도 고려하여야 함. 이에, 자격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 (신중검토)

-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

는 것은 변호사, 변리사 등 다른 자격자와 달리 의료인의 경우에만 이러한 자격 제한사유를 둘 필요가 있는지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검토 필요가 있으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구분없이 자격 제한사유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3) 대한의사협회 (반대)

□ 개정안은 단순 검거 건수만을 비교하여 의료인의 성폭력 범죄 검거 수가 다른 전문직보다 월등히 많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등록 인원수에 비례한 입건 비율은 타 전문 직종에 비하여 높지 않음.

- 2023년 기준 전문직종 등록인원: 의료인 약 22만2천여명, 변호사 약 3만6천여명

□ 타 직종에 비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있어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하여 의료인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시 20년이라는 유례없이 가혹한 자격 제한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3년간 자격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2015헌마98)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임.

4)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2023.11.20. 시행된 지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현재의 의료법을 개선하려는 최근 입법 방향(김예지 의원 발의안 등)에 역행함.
-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안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또한 상실된 것임.
- 20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영구 퇴출로 결격 기간이 비현실적이고 가혹하며, 이미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제도가 시행중이기에 중복 과잉 규제임.
 - 신체 접촉이 빈번한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의 불안감으로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5) 대한한 의사협회 (반대)

- 개정안 제8조제7호다목의 스토킹 범죄는 성적 동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 성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삭제 필요.
- 개정안 제8조제8호의 20년이라는 장기 기간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 필요.

6)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